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4월 14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관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CCTV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무단투기자 제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적용을 명시(안 제4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올해 2월부터 운영중인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제4항은 무단투기자 제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자에게 법 제68조제4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제11호에 따르면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 한편, 영등포구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라 한다)가 있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는 도시안전과 소관임에 따라,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관리 부서인 청소과 소관 조례에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2025년 2월 조사 기준, “무단투기 단속 등”을 위해 전용 CCTV 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5개(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로 파악됨.
- 안 제40조(준용규정)은 안 제4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41조(시행규칙)제1항은 구체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

□ 검토 결과

-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인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영상 정보처리기기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덧붙여,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운영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에 따라 ▲안전성 확보 ▲출입자 통제 ▲영상정보 보호원칙 ▲교육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8
----------	-----

발의연월일: 2025. 4. .

발 의 자: 이성수, 유승용, 정선희

우경란 의원(4인)

1. 제안이유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관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CCTV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무단투기자 제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4조)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적용을 명시(안 제40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무단투기자 제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 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u>
제40조(준용규정) (생략) <u><신설></u>	제40조(준용규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영 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른다.</u>
제41조(<u>권한의 위임</u>) <u><신설></u> (생략)	제41조(<u>시행규칙</u>) ① 이 조례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 로 정한다. <u>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u>